

## [ 정 정 대 비 표 ]

#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지속가능ES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직판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3월 18일

### ■ 정정대비표

#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2.28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[요약정보] 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온라인직접판매(J-e)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[요약정보]			
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2.28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온라인직접판매(J-e)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- Class J-e, - Class J-Pe - Class J-P2e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금융투자상품 명시)	가. ~ 마. (생략) 바. <신설>	가. ~ 마. (현행과 동일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- Class J-e, - Class J-Pe - Class J-P2e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2.03.18: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2.02.28 기준으로 업데이트
6. 집합투자기구의 구	직판 클래스 신설	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

조		나. 종류형 구조 <u>&lt;신설&gt;</u>	나. 종류형 구조 - J-e, J-Pe, J-P2e 추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b>가. 투자 대상</b> ① (생략) 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<u>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/u> 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③ 자산유동화: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<u>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 ④ ~ ⑪ (생략) <b>나. 투자 제한</b> ① (생략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생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</u>	<b>가. 투자 대상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<u>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/u> 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③ 자산유동화: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<u>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 ④ ~ ⑪ (현행과 동일) <b>나. 투자 제한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<u>어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</u>

		<p>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 ---(이하생략)---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</p> <p>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직판 클래스 신설</p>	<p><b>가. 매입</b>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생략)</p> <p>(4) (생략)</p> <p><b>나. 환매</b>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</u></p>	<p><b>가. 매입</b>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- J-e, J-Pe, J-P2e 추가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<b>나. 환매</b>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</u></p>

		<p>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됩니다.</p> <p>(3) ~ (8) (생략)</p>	<p>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됩니다.</p> <p>(3) ~ (8) (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- J-e, J-Pe, J-P2e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직판 클래스 신설 및 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	<p><b>가. 이익배분</b>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나. 과세</b> (1)~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<u>Class C-P, C-Pe 및 S-P 가입자</u>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 <p>- 세액공제(<u>2014.1.1 이후 납입액</u>)</p>	<p><b>가. 이익배분</b>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나. 과세</b> (1)~(3) (현행과 동일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<u>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</u>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u></p> <p>- 세액공제:</p>

		<p><u>부터 적용):</u> 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  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u>  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 및 S-P2 가입자</u></p> <p>- <u>세액공제(2015.1.1 부터) :</u> 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<u>세액공제 12%</u>.</p>	<p><u>[납입금액]</u> 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 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  ③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u>  <u>[세액공제]</u> 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<u>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, S-P2 및 J-P2e 가입자</u></p> <p>- <u>세액공제 :</u> 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</p>
--	--	--	--

		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</p> <p>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</p>	<p>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--	--	--	--

**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	<p>- 회사 연혁 추가</p> <p>- 자본금: 260.5억</p>	<p>- 2022.02.28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- 회사 연혁: 2021.05 자본금 증자 (+156.25억)</p> <p>- 자본금: 416.75억</p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

**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
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- 의무해지 (생략)</p> <p>- 임의해지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</p>	<p>-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</p> <p>- 임의해지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	--

		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	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정기보고서 (1) (생략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	가. 정기보고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
끝.